

1. 개정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기 등록관리의 국제 표준화를 위하여 2022년 7월 ICAO 부속서 7(항공기 국적 및 등록기호)에 항공기 말소등록증명서 발급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말소등록을 한 경우 말소등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항공안전법」(법률 제19985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이 개정되었음.

이의 세부이행을 위한 법정 서식의 말소등록증명서를 신설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항공기 신규등록 시의 법정 서류인 항공기 제원 및 성능표를 표준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소유자등이 항공기를 말소등록한 경우 법정서식의 말소등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23조제4항, 별지 제12호의2서식)
- 나. 항공기 신규등록 시의 법정 서류인 항공기 제원 및 성능표를 항공기 등록시스템의 입력양식과 동일하게 바꾸고 항공기 중량, 속도, 크기 등의 표시를 국제표준(MKS 단위)으로 명기(안 별지 제12호서식)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항공안전법」 제15조제4항, 「항공기등록규칙」 제20조 및 제2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 00. ~ 3.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항공기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 제목 “(말소등록의 신청)”을 “(말소등록의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항공기를 말소등록한 경우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말소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항공기 신규등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항공기 신규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항공기 말소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항공기 말소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The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말소등록증명서 CERTIFICATE OF DEREGISTRATION		말소등록증명서 번호 Deregistration Certificate No.
1. 국적 및 등록기호 Nationality and registration mark	2. 항공기 제작자 및 항공기 형식 Manufacturer and manufacturer's designation of aircraft	3. 항공기 제작일련번호 Aircraft serial no.
4-a. 항공기 등록증명서 보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Name of aircraft registration certificate holder : 등록 사유 (택 1) Basis of registration (<i>check one</i>): ☐ 항공기 소유 Ownership of aircraft ☐ 항공기 운전자 Operator of aircraft ☐ 기타 사유 Other (<i>explain</i>) :		
4-b. 항공기 등록증명서 보유자의 주소 (말소등록시점) Address of aircraft registration certificate holder (<i>at the time of deregistration</i>) :		
5. 증명서 보유자와 다른 경우 항공기 소유자 이름 및 연락처 (말소등록 시점) Name and contact information of aircraft owner, if different from aircraft registration certificate holder (<i>at the time of deregistration</i>) :		
6. 위 항공기는 대한민국 「항공안전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민간항공기 등록원부에 정식으로 말소되었음을 증명합니다.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above described aircraft has been duly removed from the Civil Aircraft Register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 of the Aviation Safety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6-a. 말소 사유 Reason(s) for deregistration :		
발행 연월일 Date of issue :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직인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10mm×297mm[120g/㎡(백상지)]

항공기 제원 및 성능표				
항공기	제작국 및 제작사		초과금지속도(KM/H)	
	연료탑재량(KG)		유상하중(KG)	
	제작일자		설계운용속도(KM/H)	
	제작일련번호		순항속도(KM/H)	
	종류 및 등급		이륙 활주거리(M)	
	감항분류		착륙 활주거리(M)	
	너비(M)		항속거리(KM)	
	길이(M)		항속시간(H:M)	
	높이(M)		운용고도한계(KM)	
	연료소모량		최대 이륙중량(KG)	
	탑승자 한계(석)		최대 착륙중량(KG)	
	화물 한계(KG)		최대 무연료중량(KG)	
	형식		자중(KG)	
	발동기	제작국		윤활유 규격
제작사			최대 회전속도(%)	
형식			최대 배기온도(°F)	
종류			최대출력(HP)	
수량			연료규격	
프로펠러	제작국 및 제작사		수량	
	형식		규격(MM)	
일반현황	등록부호		소유자(사용자)	
	등록일		사업구분	
	정치장		도입가격	

210mm×297mm[백상지 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u>말소등록의 신청</u>) ① ~ ③ (생략) <u><신설></u>	제23조(<u>말소등록의 신청 등</u>)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항공기를 말소등 록한 경우 별지 제12호의2서식 의 말소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 야 한다.</u>